제22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11. 2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2039호

나. **제 출 자** : 강 수 정 의원

다. **제출일자** : 2020. 11. 17(수)

라. **회부일자** : 2020. 11. 17(수)

2. 제안이유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장애인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 등의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장애인 체육 장려를 위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다.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사항 규정(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2)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제29조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나. 예산 조치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2020. 11. 17. 강수정의원이 발의하였으며 본칙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로 장애인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 보호.육성하도록 장애인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구가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활동에 장애인의 참여를 위해 편의를 제공하도록 정함.

○ **안 제4조는** 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으로 상시 구성인원이 10명 또는 5명 이상으로 장애인체육동호인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장애인체육 활동 실적이 있어야 등록할 수 있도록 정하여 유명무실한 동호인조직이 등록되지 않도록 하고 비장애인은 명예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상시 구성인원수에서는 제외함.

○ **안 제5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범위를 정한 바, 장애인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지도자, 장애청소년의 체육활동 육성·지원과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그 범위를 정함.

○ **안 제6조는**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장애인체육대회를 연 1회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였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체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 관련 법령 1부.

〔참고사항 1〕

2021년 금천구장애인체육회 예산편성 현황

▢ 체육회 현황

○ 구 성 일 : 2019. 12. 23.(월)

○ 임원구성 : 총16명(회장 1(구청장), 부회장 4, 사무국장 1, 감사 1, 이사 9)

- 실 근무직원 : 사무국장(정재동 만50세, 전 금천구 검도협회장)

○ 회　　장 : 유성훈(금천구청장, 당연직)

○ 주요사업

- 각 장애인단체의 체육 활동 육성 지도
- 장애인 체육교실 및 대회 개최 지원
- 서울시 및 전국단위 장애인 체육 교류

○ 장애인 체육동호인 단체 : 7종목 106명

- 보치아, 게이트볼, 금천FC(축구), 볼링, 요가, 검도, 다트

▢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소요예산			비 고
	2020년	2021년	증감	
계	**14,000**	**43,600**	**29,600**	
금천구 장애인체육회 지원	6,000	21,600	15,600	
서울시장애인체육대회 지원	3,000	3,000	동결	
전국 및 시단위 장애인행사 지원	1,000	2,000	1,000	500천원×4회
구단위 장애인 체육대회	3,000	5,000	2,000	1,000천원×5종목
장애인 대표선수 유니폼 지원	1,000	2,000	1,000	서울시단위 참가종목
사무실 집기류 구매	-	10,000	10,000	사무실이전 물품구매 (책상, 소파 등)

[참고사항 2]

금천구장애인체육회 운영현황

▢ 구성현황

○ 단 체 명 : 금천구장애인체육회

○ 회　　장 : 유성훈(금천구청장, 당연직)

○ 구 성 일 : 2019. 12. 23(월)

○ 임원구성 : 총16명

○ 사 무 실 : 금천구 시흥대로 268, 3층(시흥동) - 사무국장 사무실 겸용

▢ 추진사항

○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간담회 : 2회(2019.05.13. / 2019.12.12.)

○ 창립총회 개최 : 2019. 12. 23.(월)

- 임원 선출(회장 1인(구청장) 외 15명), 규약 심의
-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사항 논의

○ 장애인체육회 구지부 인준 : 2020. 02. 20(목) - 서울시장애인체육회

○ 장애인체육회 구지부 인증패 전달식 : 2020. 05. 14(목)

○ 이사회 개최 : 2020. 06. 30.(화)

- 임원 위촉 및 임명장 수여, 구성경과 및 2020 사업계획 보고

▢ 소요예산 및 주요사업

(단위 : 천원)

구분	소요예산	사 업 명	비 고
계	25,000		
구비	14,000	- 서울시장애인체육대회 지원 : 3,000 - 시단위 장애인행사 지원 : 1,000 - 구단위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 3,000 - 장애인 대표선수 유니폼 지원 : 1,000 - 금천구 장애인체육회 지원 : 6,000	사업 추진 시 장애인체육회 보조금 집행 후 정산
시비	11,000	- 자치구 장애인체육회 행정운영비 (물품구입비, 홍보비 등)	

※ 2021년 예산편성 : 43,600천원(증 29,600천원)

- 인건비 12,000천원, 운영비 및 행사비 등 17,600천원

[참고사항 3]

2020년 자치구 장애인체육회 운영 현황

연번	자치구	설립일	직 원 현 황				사무실	소 요			
			계	사무국장	직원	지도자 (파견)		계	사무국장 인건비		
									소 계	국비	구비
1	노 원	'10.01.19.	4	1	1	2	유	101,559	26,400	12,000	14,400
2	은 평	'13.02.05.	1	1	0	0	유	190,600	36,000	12,000	24,000
3	영 등 포	'13.08.20.	3	1	0	2	유	49,680	26,880	-	26,880
4	종 로	'13.11.19.	3	1	1	1	무(겸직)	43,000	-	-	-
5	성 북	'13.11.19.	3	1	1	1	무(겸직)	93,600	-	-	-
6	양 천	'13.11.19.	2	1	1	0	무(겸직)	34,500	12,000	12,000	-
7	강 동	'13.12.27.	4	1	2	1	무(겸직)	32,000	-	-	-
8	송 파	'13.12.27.	5	1	0	4	유	63,358	25,200	-	25,200
9	강 북	'16.02.24.	2	1	0	1	무(겸직)	54,260	-	-	-
10	강 서	'16.02.24.	3	1	0	2	유	102,400	35,400	12,000	23,400
11	성 동	'16.02.24.	2	1	0	1	무(겸직)	20,400	-	-	-
12	관 악	'16.11.29.	5	1	1	3	유	35,420	18,000	12,000	6,000
13	서 대 문	'16.11.29.	1	1	0	0	유	81,740	36,000	12,000	24,000
14	마 포	'18.02.20.	4	1	1	2	무(겸직)	38,185	-	-	-
15	강 남	'19.02.28.	5	1	2	2	유	122,067	33,600	-	33,600
16	구 로	'20.02.20	3	1	0	2	유	54,400	36,000	12,000	24,000
17	동 대 문	'20.02.20	4	1	1	2	무(겸직)	13,600	-	-	-
18	금 천	'20.02.20	3	1	0	2	무(겸직)	25,000	-	-	-

붙임1 관련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③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이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7.>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 연구 · 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 6. 12.>
③ 삭제 <2018. 6. 12.>
④ 삭제 <2018. 6. 12.>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① 제29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조사 · 연구 및 정책개발 · 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 · 분석 · 관리, 조사 · 연구 · 정책개발 및 국제개발 등의 국제협력 사업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 · 지원
4.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지원
5.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

6.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 지침 개발 · 보급 등 장애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⑤ 개발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체육활동을 주최 ·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 · 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